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1. 제안 경위

가. 제 안 자: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(외 9명)

나. 의안번호: 제365호

다. 제안일자: 2019. 1. 31

라. 회부일자: 2019. 2. 7

2. 제안 사유

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공원 이용시설을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(안 제12조 제3항 신설).
- 나. 공원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적 예약시스템 구축·운영을 규정함(안 제12조 제4항 신설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(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도 붙임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독점사용 방지에 관한 규정을
 신설하여 한강공원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를 위해,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시 전자적 예약시스템에서 관리,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됨.

나. 검토의견

1) 한강공원이용시설의 독점시용 방지 규정 신설(안 제12조 제3항)

 공원이용시설이란 "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 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"을 말하는 것으로, 이용시설의 종류1)에 따라 구분하여 [별표 1]에 규정하고 있음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

제3조(정의)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한강공원"이란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
- 2. "보전"이란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.
- 3. "<u>공원이용시설</u>"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 된 시설을 말한다.
- 4. "이용료"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「하천법」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¹⁾ 공원이용시설의 구분 : 1.수상이용시설, 2.체육시설, 3.휴양시설, 4.학습시설, 5.시민편의시설, 6.유회시설, 7.공원편의시설, 8. 조경시설, 9.기타시설

- 또한, 공원이용시설은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「하천법」의 적용 또는 준용 대상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.
- 「하천법」 제4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한강공원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음. 다만,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, 그러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8036 판결,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21058 판결 참조).

하천법

제4조(하천관리의 원칙)

-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**사권(私權)**을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- 2.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
- 3.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(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)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
- 위에서 본 하천법의 규정 내용과 본 조례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을 비추어 볼 때, 공원이용시설의 독점적 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 을 마련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안 제12조 제3항은 어문 규범에 맞게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 요하다고 사료됨.

<표 1>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		
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・운	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・운	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・운		
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③ 시장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	③ 시장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		
	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	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		
	방지하여 공원이용시설을	방지하여 공원이용시설을		
	<u>다양한</u> 시민이 이용할 수 있	<u>모든</u>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		
	도록 한다.	록 한다.		

2) 공원이용시설의 전자적 예약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 제4항)

- 안 제12조 제4항은 모든 공원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
- 현재,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용시설은 [별표 1]과 같이 규정²⁾되어 있으며 이중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공원이용시설은 난 지캠핑장, 서울함공원, 일부 체육시설, 생태공원(민간위탁) 등이 있으며,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과 시설 운영자 개별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사용이 가능함.
- 공원이용시설 중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인공암벽장이나 파크골프장 등으로 상시 개방되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자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센터나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음(붙임 1. 참조)

²⁾ 신규 설치된 공원이용시설은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

- 이밖에, 한강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써 잔디밭, 광장, 도로, **야외무대** 등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마련한 「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」에 따라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, 현재 장소사용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원안내센터에 FAX 또는 우편(E-mail) 및 방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. 또한, 장소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장소사용 승인이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일부 시설은 조례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인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해 이용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공원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적 예약시스 템을 도입하여 이용시설의 편리이용과 장소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- 그러나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과 같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 시설 등에 대해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음.
- 또한, 본 조례안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상시 개방시설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검토의견

- 한강공원 이용시설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므로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시민 편리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한 강사 업본부 🐪 🔾 다만, 상시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시설(주차장, 자전거대여점·공방 등) 및 소음·안전·청소대책 등 행사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행사 (마라톤, 콘서트 등)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함 ※ 추가조항(안): 상시이용가능 하거나 사전협의가 필요한 이용시설물 등의 경우 전자적 예약 시스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
- 따라서, 한강공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전자적 예약시스템 도입은 시설 별 특성, 이용자, 특정단체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는 특정단체나 개인이 공원이용시설을 독점적으 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시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 는 등 철저한 관리 · 감독이 요구됨.

[별표 1]

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

구 분	공원시설물
1. 수상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 구조선, 기타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 장 나. 여의도 물빛무대 다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
2. 체육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 민턴장, 게이트볼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
3. 휴양시설	가. 캠핑장, 분수대, 강변물놀이장, 수영장, 선탠장, 전망쉼터, 낚시터 (단,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)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
4. 학습시설	가. 자연학습장, 물고기길, 생태학습지원시설(수변생태학습센터, 한강야생 탐사센터), 여의도 샛강 방문자센터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
5. 시민편익시설	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전망문화콤플렉스(자벌레), 야외원형극장, 야외무대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
6. 유희시설	가. 어린이놀이터, 자전거공원(이색자전거체험장, 레일바이크, MTB코스 장, 익스트림장, 자전거교육장 등), 모형항공기 이·착륙 시설, 레이싱경기 장, 자전거대여소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
7. 공원편의시설	가. 주차장, 화장실, 자전거보관소, 조명시설, 음수대, 그늘막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8. 조경시설	가. 잔디밭, 꽃단지, 유채단지, 갈대밭, 보리밭, 초지, 호안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 설
9. 기타시설	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설 치된 시설

※ 붙임 1. 한강공원 이용시설 운영현황('19.2월 기준)

구 분	직 영 시 설		민간운영시설 (위탁·수익허가)		=	
	공공예약 시스템 운영	장소사용승인 및 대관	상시이용시설(무료)	온라인예약 시스템 운영	예약 미운영	비고
체 육 시 설	축구,야구,배구,족구,농 구,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		인공암벽장, 파크골프장, 우드볼장, 인라인장, X-게임장, 게이트볼장, 비치발리볼, 다목적운동장, 육상연습장	테니스장 (자체) 눈썰매장 (자체)	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난지국궁장 이촌축구교육장(회원제) 론볼링장	
휴 양 시 설			분수대, 전망쉼터, 낚시터	캠핑장(자체), 수영장(자체) 강변물놀이장(자체)		
학 습 시 설	생태학습시설(직영) 여의도샛강방문시설		자연학습장	생태학습시설 (위탁 공공예약시스템)		
시 민 편 익 시 설		광진교8번가 (대관, 무료) 야외무대 (사용승인,무료)	자벌레		전망카페, 매점	
유 희 시 설	광나루드론공원		놀이터, 자전거교육장 MTB·레이싱경기장, 익스트림체험장		자전거대여소·공방	
편 의 시 설			화장실, 음수대 자전거보관소, 그늘막		주차장	
수 상 이 용 시 설		물빛무대 (대관, 유료) 한강 홍보선 (대관,유료)		수상택시(자체)	한강아라호(임대운영)	
조 경 시 설			잔디밭, 꽃단지, 갈대밭 등 호안			
기 타	공원 내 영화촬영, 녹화	행사 등 장소 승인 [잔디밭,운동장(체 육시설), 둔치, 광장, 도로 등]		서울함공원(자체)		